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수순천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3. 3. ~ 3. 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3. 8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81호
----------	--------

발의연월일 : 2021. 2. 22.

김병권 · 이영란

발 의 자 : 이현재 · 김영진

장숙희 · 허유인 의원

1. 개정이유

-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제2항)
- 의원인 위원의 경우 결산검사 기간과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 (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표위원) ① (생 략)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제6조(대표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 ----- ----- <u>.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14.>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2.>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감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 12., 2017. 7. 26.]

순천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95.01.10 조례 제 50호
 (일부개정) 1995.09.20 조례 제 171호
 (일부개정) 2000.02.21 조례 제 492호
 (일부개정) 2002.05.01 조례 제 635호
 (일부개정) 2007.06.15 조례 제 928호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1066호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8.02.05 조례 제1849호
 (일부개정) 2018.08.16 조례 제1916호
 (전부개정) 2019.06.10 조례 제20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위원회 정수) 위원회의 정수는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6.1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순천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5.09.20>

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1995.09.2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7.06.15>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7.06.15, 2018.2.5>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08.16>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6.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할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06.15>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개정 2007.06.15, 2019.06.10>

구 분	액 수
일 비	20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른 부시장 상당액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직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80호
----------	--------

발의연월일 : 2021. 2. 22.

발의자 : 김병권 · 이영란
이현재 · 김영진
장숙희 · 김미연
허유인 의원

1. 개정이유

-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희생자 위령사업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협의회 구성 시 위촉대상에 관련 연구소 및 연구자 대표를 포함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
- 협의회 산하 범시민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안 제6조)
- 협의회 공동위원장 선출 근거 마련 및 협의회 위원 구성 대상 추가 (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직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직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를 “인권증진 및 화해조치, 특별법 제정 등을”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홍보·문화·예술 등 지원사업

제6조 말미에 “협의회 산하에는 여순사건 역사 제대로 알리기 및 특별법 제정 홍보, 확산 운동 전개를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8조제1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련 연구소 및 연구자 대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순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u>화해조치</u>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1.~4. (생략) 〈신설〉 5. (생략) ② (생략)	제5조(지원사업 등) ① ----- ----- <u>화해조치, 특별법 제정 등을</u> ----- -----. 1.~4. (현행과 같음) 5. <u>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홍보 · 문화 · 예술 등 지원사업</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여순10·19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특별법 제정 등 관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여순10·19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후단 추가〉	제6조(여순10·19민관협의회 설치) ----- ----- ----- -----. <u>협의회 산하에는 여순 사건 역사 제대로 알리기 및 특별법 제정 홍보 · 확산 운동 전개를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둘 수 있다.</u>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u>호선한다</u>.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 ----- ----- ----- <u>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②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3. (생략) 〈신설〉 ③ (생략)	② ----- ----- ----- -----. 1.~3. (현행과 같음) <u>4. 관련 연구소 및 연구자 대표</u> ③ (현행과 같음)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3.09 조례 제1627호

(전부개정) 2018.10.31 조례 제1927호

(일부개정) 2020.11.18 조례 제21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약2년 동안의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등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입증 받은 지역민 희생자가 순천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순천시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지역민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순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1.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
2.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유적지 정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을 민간사회단체가 대행할 경우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여순10·19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특별법 제정 등 관련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여순10·19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인 희생자 관련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 피해자 조사 및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18.]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및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18.]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2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3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4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각종 위령 및 기념사업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위령사업 및 기념행사의 기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1.18.]

부칙 <조례 제1927호,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399호
----------	--------

발의연월일 : 2021. 2. 26.

김영진 · 오행숙

발 의 자 : 남정옥 · 장숙희

이복남 의원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순천시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 사업)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체육행사
2.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순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천시 향우인증(이하 “순천향우인증”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순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순천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순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순천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시식에 따라 순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순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순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순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순천향우인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 명		(남/여)					
	소속 향우인회							
	연락처		주택			핸드폰		
발급대상	관계	성 명 (한자 및 영문)	성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비고 (주요경력)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초본 각 1부 2. 사진(3.5cm × 4.5cm) 2장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천향우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순 천 향 우 인 증	
제 호	
사 진	성 명 :
	생년월일 :
	출신지(읍·면·동) :
	주 소 :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직 인	

규격 : 85mm × 54mm

(뒷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천향우인임을 증명합니다. ※ 이 증을 소지한 순천향우인은 「순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등을 순천시민과 동일 하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규격 : 85mm × 54mm

[별지 제3호서식]

순천향우인증 발급대장

연번	접수 일시	신 청 자					발급번호	발급일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주소	등록기준지			

※ 비고란에는 신규, 재발급으로 구분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 관련 조례 현황 : 60지자체

- 1 광역시 : 대구광역시
- 6 도 :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 53 시군 : 여주시 등 53개 기초지자체

○ 감면 대상 및 혜택 등 타시군 조례 비교

지자체	출향인증	대상	자격	향우인증자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혜택
경남 거제시	거제향인증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록기준지	시민과 동일
경남 밀양시	밀양향우인증	본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시민과 동일
경남 통영시	통영향인증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록기준지	필요한 지원
충남 서천군	출향서천군민증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록기준지	군민과 동일
강원 삼척시	출향삼척시민증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록기준지 주민등록10년	시민에 준하는

○ 우리시 시민 입장료 등 감면 현황(대인 기준)

- 순천시민 1년회원권 : 10,000원
5개소(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 순천만습지, 국가정원(통합권 75%) : 입장료 8,000원 ⇨ 시민 2,000원
관외주민1년권 : 30,000원
- 드라마촬영장(50% 감면) : 입장료 3,000원 ⇨ 시민 1,500원
- 낙안읍성(50% 감면) : 입장료 4,000원 ⇨ 시민 2,000원
- 뿌리깊은나무박물관(50% 감면) : 입장료 1,000원 ⇨ 시민 500원
- 낙안민속자연휴양림(100% 감면) : 입장료 1,000원 ⇨ 시민 무료
사용료 20% 감면(비수기 평일 한)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8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2. 25.

1. 개정이유

-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내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및 상생발전의 기틀 마련
- 하도급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원칙 확립

2. 주요내용

- 지역 업체 참여 권장 신설(안 제3조)
 -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인력 등 우선사용 권고
- 발주부서의 실태 점검의무 신설(안 제4조)
 - 대상 : 5천만원 이상으로 30일 이상 공사
 - 내용 :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 점검
- 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신설(안 제8조)
 - 하도급계약 체결 및 통보 시 하도급 청렴의무 서약서 제출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1. 15. ~ 2.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 14.(여성가족과-105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 7.(기획예산실-26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1. 15.(순천시 공고 제2021-80호)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3조, 제4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순천시 관할 구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지역 건설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발주부서의 실태점검 의무) 발주부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육성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착공 후 15일 이내에 회계담당 부서 및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에 관한 사항

제8조(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수급인은 하도급업체 보호 및 상생발전을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청렴의무서약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순천시 관할구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이 지역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지역 건설업체와 우선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u><신 설></u>	제4조(발주부서의 실태점검 의무) 발주부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육성을 위해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착공 후 15일 이내에 회계담당 부서 및 감사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노무비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에 관한 사항
<u>제3조 ~ 제5조 (생략)</u>	<u>제5조 ~ 제7조</u> (현행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
<u><신 설></u>	제8조(수급인의 하도급 청렴의무) 수급인은 하도급업체 보호 및 상생발전을 위해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청렴의무 서약서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u>제6조 ~ 제8조 (생략)</u>	<u>제9조 ~ 제11조</u>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제3396호
--------	--------	--------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이현재 · 나안수
박혜정 · 문규준
정홍준 · 서정진
이복남 · 김병권
장숙희 · 허유인
남정옥 의원

1. 제안이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순천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제6조)
- 마. 체육인 인권헌장 (안 제7조)
- 바. 인권교육 및 홍보 (안 제8조)
- 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 및 위탁 (안 제9조 ~ 제10조)
- 아. 비밀누설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수반
- 다. 타 지자체 입법례 : 전국 8개 지자체(특별·광역시 5, 기초 3 / 전남 : 0)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순천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
- 3."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 4."경기단체"란 순천시체육회 및 순천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 순천시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등을 말한다.
- 5."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방향
2.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
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4.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
5.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상황 평가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체육인 인권보호·스포츠비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목 의원 대표발의)

의 변	안 호
	제3398호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오광목 · 이현재
서정진 · 이복남
장숙희 의원

1. 제정이유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달라진 관광 여건에 대응하고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체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수정(제14조제3항 관련)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참조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분야	구분	지급 기준 (1회 방문)	지급단가		지급 대상
			성수기 (3~6월, 9~11월)	비수기 (7~8월, 12~2월)	
숙박	내· 외국인	내국인 10명 이상	1박 10,000원	1박 12,000원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사)
		외국인 3명 이상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0명 이상	1박 6,000원		
			2박 이상 10,000원		
체험	농촌 체험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3명 이상	1인당 체험경비의 50% 범위내 최대 5,000원 ※ 분야별 인센티브 중복 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 기준 (1회 방문)	지급단가		지급 대상
		성수기 (3~6월, 9~11월)	비수기 (7~8월, 12~2월)	
내· 외국인	<u>내국인</u> <u>15명</u> <u>이상</u>	1박 10,000원	1박 12,000원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사)
	<u>외국인</u> <u>5명</u> <u>이상</u>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수화여행 및 학생단체	<u>20명</u> <u>이상</u>	<u>1박</u> <u>4,000원</u> <u>2박 이상</u> <u>6,000원</u>		※ 숙박비와 체험료가 중복시 하나만 지원
농촌 체험	<u>체험</u> <u>참여자</u>	<u>체험경비의</u> <u>50%범위내</u>		
	<u>내국인</u> <u>10명</u> <u>이상</u>	<u>1박</u> <u>10,000원</u>	<u>1박</u> <u>12,000원</u>	
	<u>외국인</u> <u>5명</u> <u>이상</u>	<u>2박 이상</u> <u>15,000원</u>	<u>2박 이상</u> <u>20,000원</u>	

개정안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분야	구분	지급 기준 (1회 방문)	지급단가		지급 대상
			성수기 (3~6월, 9~11월)	비수기 (7~8월, 12~2월)	
숙박	내· 외국인	<u>내국인</u> <u>10명</u> <u>이상</u>	1박 10,000원	1박 12,000원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사)
		<u>외국인</u> <u>3명</u> <u>이상</u>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체험	수화여행 및 학생단체	<u>10명</u> <u>이상</u>	<u>1박</u> <u>6,000원</u> <u>2박 이상</u> <u>10,000원</u>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사)
	농촌 체험	<u>내국인</u> <u>10명</u> <u>이상</u>	<u>1인당</u> <u>체험경비의</u> <u>50% 범위내</u> <u>최대 5,000원</u>		
		<u>외국인</u> <u>3명</u> <u>이상</u>	<u>※ 분야별 인센티브</u> <u>중복 가능</u>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지원단가, 지급대상은 별표1과 같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세출

○ 산출근거 기준

- 세출 : 10,000원(인센티브) x 인원수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249,500	-49,500	-50,000	-50,000	-50,000	-5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249,500	49,500	50,000	50,000	50,000	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249,500	49,500	50,000	50,000	50,000	50,000
시 비	249,500	49,500	50,000	50,000	50,000	50,000

참 고

관련조항 및 타지자체 비교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38호, 2020. 6. 1., 일부개정]

제1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2. 도농교류나 농산어촌체험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3. 여행업자가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관내 숙박시설은 숙박업소, 펜션업, 청소년수련원 휴양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시설,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지원단가, 지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④ 그 밖에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타지자체 인센티브 비교

지역	구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여수	내국인	10명 이상	1박 : 12,000원
	외국인	5명 이상	2박 : 2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30명 이상	3박 : 27,000원
광양	내국인	20명 이상	1박 : 6,000원
	외국인	5명 이상	2박 : 9,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20명 이상	3박 : 12,000원
목포	내국인	10명 이상	10,000원×인원×일수
	외국인	20명 이상	12,000원×인원×일수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20명 이상	5,000원×인원×일수
진주	내국인	10명 이상	당일 : 5,000원 1박 : 10,000원 2박 : 20,000원
	외국인	20명 이상	12,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20명 이상	3,000원
진주	내국인	20명 이상	1박 : 10,000원 2박 : 20,000원
	외국인	10명 이상	당일 : 10,000원 1박 : 20,000원 2박 : 3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40명 이상	5,000원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38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2. 25.

1. 제정이유

- 순천만 야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순천만 야시장을 낮과 밤을 연결하는 체류형 야간 관광 핵심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 도모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을 도심으로 연결하는 거점 역할 수행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조례 제정의 목적
- 안 제2조~제3조 : 순천만 야시장의 위치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4조~제5조 : 적용범위 및 시설기준
- 안 제6조 : 사용허가(운영자 선정 방법 등 규정)
 - 공개모집 원칙, 사회적 취약계층은 제한공모 실시 가능
- 안 제7조(사용료 등) : 사용료 납부 및 보증금 부과 근거 규정
- 안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 사용허가 취소 사유 규정
- 안 제9조(운영자에 대한 지원) :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규정
- 안 제10조(운영자의 의무) : 야시장 운영을 위한 준수사항 규정
- 안 제11조~제14조(협의회 설치, 회의, 수당지급, 준용)
 - 순천만 야시장 지원협의회 설치(9명 / 당연직 1, 위촉직 8)
 - 임기 2년 / 정례회 연 1회, 임시회 수시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1. 25. ~ 2. 1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 21.(여성가족과-17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1. 13.(지역경제과-191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 20.(기획예산실-98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1. 25.(순천시 공고 제2021-202호)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만 야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만 야시장을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천만 야시장은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691번지 일원(동천변 저류지 다목적 광장)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천만 야시장(이하 ‘야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에서 정한 지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야시장에서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이라 한다)”라 함은 야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이나 음식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개조된 자동차 또는 푸드 트레일러를 말한다.
4. “플리마켓”이라 함은 야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물품 등을 가지고 나와 매매나 교환하는 곳을 말한다.
5. “운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야시장에서 푸드트럭 및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야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기준) 제3조제3호에 따른 푸드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야시장 사용허가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 공모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다문화 가족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7.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모 등
8. 그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는 야시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최종 선정 후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야시장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제3조제4호의 플리마켓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후에는 운영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플리마켓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보증금 등을 참가비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제6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과 운영자 간에 체결한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푸드트럭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할 경우
3.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제9조(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상인회 또는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자 대상 창업·운영·위생 교육
 2.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일회용품 및 쓰레기 배출 감소 등을 통한 친환경 야시장 조성
 4. 푸드트럭 구조 변경
 5. 그 밖에 야시장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영업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영업장소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성실히 영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으로 폐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영자는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용상의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한 순천만 야시장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시장 활성화 및 홍보 방안

2. 야시장 운영 관련 제안 사항

3. 야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야시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야시장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순천시에 등록된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상인회 소속 회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3. 관련분야 대학교수

4. 그 밖에 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야시장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야시장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야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0 - 호

순천만 야시장 사용허가증

	운 영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허 가 호 수			면 적	m ²
	사 용 기 간		20 . . . ~ 20 . . .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푸드트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야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1. (사용목적) 이 푸드트럭의 사용허가 업종은 _____으로 한다.
2. (사용기간) 이 푸드트럭의 사용기간은 상기 명시된 기간과 같다.
3. (사 용 료) 사용료는 금_____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4.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순천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보증금 등 납부) ① 보증금은 순천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 외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그 밖의 명목의 다른 보상이나 권리 또는 연고권을 우리시에 청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6. (운영자의 행위 제한 및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관련 법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9조(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야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상인회 또는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야시장 부지 공시지가 99,000원, 대부료율은 1,000분의 50 적용
○ 사용면적 : 푸드트럭 26㎡(6.5m×4.0m), 플리마켓 3㎡(2.0m×1.5m)
○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2022년까지 운영 후 2023년부터는 상인회 자체 운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3,020,396	-2,041,434	-288,440	-230,174	-230,174	-230,174
세입(a)	32,967	3,663	7,326	7,326	7,326	7,326
세출(b)	3,053,363	2,045,097	295,766	237,500	237,500	237,500

※ 세입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3,053,363	2,045,097	295,766	237,500	237,500	237,5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1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041,434
세입	소계		3,663
	사용료	• 푸드트럭 : 99,000원 × 26㎡ × 50/1,000 × 1/2(6개월) × 50개소	3,217
		• 플리마켓 : 99,000원 × 3㎡ × 50/1,000 × 1/2(6개월) × 60개소	446
세출	소계		2,045,097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29,133천원	29,133
	운영경비	• 용기 및 소모품 구입 : 18,000천원	44,500
		• 홍보자료 제작 : 10,000천원	
		•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등 : 10,000천원	
		• 야시장 상인 교육 강사 수당 등 : 6,500천원	
	방송 및 컨설팅	• 푸드트럭 운영자 음식자문 및 홍보 : 100,000천원	100,000
	행사경비	• 개막식 및 소규모행사 운영 : 75,000천원	75,000
	공공운영비	• 전기 및 상하수도 공공요금 등 : 21,464천원	86,464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65,000천원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 처리 위탁비 : 60,000천원	60,000
	시설비	• 안내소 및 의료시설 : 50,000천원	850,000
		• 대형 게이트 : 100,000천원	
		• 경관조명 : 150,000천원	
		• 데크 및 안전휀스 : 550,000천원	
	푸드트럭 구조변경	• 16,000천원 × 50대 = 800,000천원	800,000

○ 2022년

○ 2023년 이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88,440
세입	소계		7,326
	사용료	• 푸드트럭 : 99,000원 × 26㎡ × 50/1,000 × 50개소	6,435
		• 폴리마켓 : 99,000원 × 3㎡ × 50/1,000 × 60개소	891
세출	소계		295,766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58,266천원	58,266
	운영경비	• 소모품 구입 : 15,000천원	36,500
		• 홍보자료 제작 : 10,000천원	
		•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등 : 5,000천원	
		• 야시장 상인 교육 강사 수당 등 : 6,500천원	
	행사경비	• 소규모행사 운영 : 50,000천원	50,000
	공공운영비	• 전기 및 상하수도 공공요금 등 : 35,000천원	35,000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 처리 위탁비 : 96,000천원	96,000
	시설비	• 기반시설 유지보수 : 20,000천원	20,000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세입-세출)			-230,174
세입	소계		7,326
	사용료	• 푸드트럭 : 99,000원 × 26㎡ × 50/1,000 × 50개소	6,435
		• 폴리마켓 : 99,000원 × 3㎡ × 50/1,000 × 60개소	891
세출	소계		237,500
	운영경비	• 소모품 구입 : 15,000천원	36,500
		• 홍보자료 제작 : 10,000천원	
		•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등 : 5,000천원	
		• 야시장 상인 교육 강사 수당 등 : 6,500천원	
	행사경비	• 소규모행사 운영 : 50,000천원	50,000
	공공운영비	• 전기 및 상하수도 공공요금 등 : 35,000천원	35,000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 처리 위탁비 : 96,000천원	96,000
	시설비	• 기반시설 유지보수 : 20,000천원	20,000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과 장 김 영 남 (☎ 749-5487)

야시장TF팀장 김 대 규 (☎ 749-5806)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제338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2. 25.

1. 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용
 - 법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 농촌융복합산업육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한 시설 및 기준
 - (종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 (기준) 건축물 종류별 연면적 합계 500㎡ 미만, 기타 시설기준은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설치 제한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1. 15. ~ 2. 5.)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 14.(여성가족과-107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 6.(기획예산실-11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1. 15.(순천시 공고 제2021-129호)

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찰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38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2. 25.

1. 개정이유

- 순천소형경전철(스카이큐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권 도입
- 안정적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을 위한 입장 및 행위 제한 내용 정비
-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 주요내용

- ‘국가정원-습지-소형경전철’ 통합권 도입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 입장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정원 내 통행시 사고유발 위험이 있는 탈 것의 기준 구체화
 - (안 제8조) 사전 허가없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 사용 제한
-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대관 허가 및 변경 신청 제한 완화 : “7일 전 신청” → “사용 전 신청”
 - (안 제14조) 허가자 책임면제 조항 삭제
 - (안 제18조) 환불 금액 조정 : 1일 전 취소 시, “50% 반환” → “90% 반환”
- 대관사용료 및 촬영료 전반에 관한 사항
 - (안 별표3) 대관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정비,
촬영료 책정 기준 재정립 : 장르구분 폐지, 사용시간 조정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1. 15. ~ 2.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 27.(여성가족과-213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1. 15.(국가정원운영과-36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1. 22.(기획예산실-113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1. 15.(순천시 공고 제2021-104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바퀴 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단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사전협의 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제11조제2항 중 “7일 전”을 “사용 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전액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4호 중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료의 90%”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다음날 사용료의 10%와 사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별표 1, 별표 3,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14,0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11,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6,000원	5,500원 (단체:4,500원)	4,000원 (단체:3,0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2.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지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7.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8. “순천시민 1년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별표 3]

사용료(제12조 관련)

☐ 시설별 사용료

구 분		기준시간 (3시간)	초과시간 (1시간 당)	1일	비 고
실내 시설	컨퍼런스홀	150,000원	30,000원	300,000원	냉·난방 사용 시 시간당 5,000원
	입체영상관	100,000원	20,000원	200,000원	
	갯지렁이 전시관	—	—	72,000원	
실외 시설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15,000원	5,000원	40,000원	
	동천 갯벌공연장	75,000원	15,000원	200,000원	

행사 규모(관람석 기준)	1,000석 미만	1,000석 이상 2,000석 미만	2,000석 이상
잔디마당	7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 1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말한다.

※ 연습 및 리허설, 행사준비 및 철수를 위한 시간 모두 사용 시간에 포함된다. 단, 이를 위해 전날 및 다음날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 잔디마당은 품격 있는 행사만 허용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

☐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구 분	기준시간(4시간)	초과시간(1시간 당)	1일	비 고
사용료	300,000원	50,000원	1,000,000원	관리자와 사전협의된 인터뷰는 제외

※ 사용시간은 스태프, 장비, 세트, 소도구 등의 입장시각부터 퇴장시각까지로 한다.

※ 1일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순천만국가정원 MICE(마이스)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신청기관 (단체명 / 부서명)			
	성명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행사명		참가인원		
행사내용				
사용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시간) *본 행사 시작 시간 (일/시): ※ 대관시간에 준비 및 철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 용 시 설	실내시설	☐ 컨퍼런스홀 ☐ 입체영상관 ☐ 갯지렁이전시관		☐ 냉·난방시설
	실외시설	☐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 동천 갯벌공연장 ☐ 잔디마당		
	기 타	☐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		
변경 사유 (세부적으로)				
순천시가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인) 휴 대 폰 : _____ 이 메 일 : _____ 20 년 월 일 순 천 시 장 귀하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순천만국가정원 시설 이용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간 보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람이 순천만국가정원 시설을 이용·신청하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이용에 보호자로서 동의 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7조(입장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6. (생략) 7. <u>자전거, 오토바이, 인라인스케이트, 전동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단, 정원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순찰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u> 8. (생략)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u><신 설></u> 5.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u>7 일전</u>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입장제한) ----- ----- -----. 1.~6. (현행과 같음) 7. <u>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단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사전협의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u> 8. (현행과 같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 -----. 1.~4. (현행과 같음) 5. <u>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을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1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u> <u>용 전</u>-----.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사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사용제한)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1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신 설>

제12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전액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사용료의 반환) -----

-----.
1.~3. (현행과 같음)
4. -----

: 사용료의 90%
5.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다음날 사용료의 10%와 사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순천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순천시민 1년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10,000원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은 불가함

<비 고>

<신 설>

1. ~ 3. (생 략)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 7. (생 략)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구분	단일권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			통합권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소형경전철)			
	성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 · 군인	어린이	유아
개인	8,000원	6,000원	4,000원	<u>14,000원</u>	<u>12,000원</u>	<u>8,000원</u>	<u>5,000원</u>
단체	6,000원	5,000원	3,000원	<u>11,000원</u>	<u>8,000원</u>	<u>6,000원</u>	<u>3,000원</u>
순천 시민	2,000원	1,500원	무료	<u>6,000원</u>	<u>5,500원</u> (단체	<u>4,000원</u> (단체	무료
					<u>:4,500원</u>)	<u>:3,000원</u>)	
순천 시민 1년 회원권	10,000원						
1년권	30,000원	20,000원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할인 등 기타 중복 할인은 불가함

2.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비 고>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5

[별표 3]

사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오전	오후	1일
대회의장	컨퍼런스홀	120,000원	180,000원	300,000원
전시장	갯지렁이전시관	-	-	72,000원
공연장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15,000원	20,000원	35,000원
	동천갯벌공연장	75,000원	110,000원	180,000원

행사 규모(관람석)		1,000석 미만	1,000석 이상 2,000석 미만	2,000석 이상
공연장	잔디마당	7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 단, 품격 있는 행사만 허용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				

구 분		평일	토·공휴일	비고
회의시설	소회의실1	25,000원	40,000원	2시간 기준
	소회의실2	15,000원	20,000원	"
	소회의실3	70,000원	110,000원	"
	소회의실4	40,000원	60,000원	"
입체영상관		100,000원		3시간기준
부대시설 (냉·난방)		5,000원		1시간 기준

※ 습지센터 소회의시설 및 동문 소회의시설은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10,000원 추가

※ 입체영상관은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 당 20,000원 추가

☐ 드라마 및 영화 촬영 등

구 분	영 화	드 라 마	영화, 드라마 이외의 촬영	예식	비 고
사용료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일 기준

※ 이용료 1일 기준은 00:00 ~ 24:00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사 회 복 무 요 원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별표 3]

사용료(제12조 관련)

☐ 시설별 사용료

구 분		기본시간 (3시간)	초과시간 (1시간 당)	1일	비 고
실내 시설	컨퍼런스홀	150,000원	30,000원	300,000원	냉·난방 사용 시 시간 당 5,000원
	입체영상관	100,000원	20,000원	200,000원	
	갯지렁이 전시관	-	-	72,000원	
실외 시설	습지센터 야외공연장	15,000원	5,000원	40,000원	
	동천 갯벌공연장	75,000원	15,000원	200,000원	

행사 규모 (관람석 기준)	1,000석 미만	1,000석 이상 2,000석 미만	2,000석 이상
잔디마당	7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 1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말한다.

※ 연습 및 리허설, 행사준비 및 철수를 위한 시간 모두 사용시간에 포함된다. 단, 이를 위해 전날 및 다음날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 잔디마당은 품격 있는 행사만 허용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승인을 결정한다.

☐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삭 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소형경전철 통합권 운영
- 관련 조문 : 별표 1 관람료(제4조 관련)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통합권 발권자 수는 4년간 평균 입장객 수의 13%로 산정
 - 스카이큐브 통합입장권 판매에 대한 탑승율 설문조사 결과(33%)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율(60%) 반영
- 평균 입장료는 통합권-단일권 차액의 83%로 산정
 - 기존 스카이큐브 성인탑승료(8,000원) 대비 5년간 평균 탑승료(6,680원) 비율 = 83% * 할인 탑승권 반영
- 통합발권 홍보 및 문학관역 ~ 순천만 습지 도보이동 구간 이동 수단 마련으로 통합권 수입 매년 2% 증가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1,496,343	2,198,213	2,255,947	2,301,066	2,347,088	2,394,029
세입(a)	11,509,843	2,211,713	2,255,947	2,301,066	2,347,088	2,394,029
세출(b)	13,500	13,500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3,500	13,500	-	-	-	-
시 비	13,500	13,500	-	-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5-1. 세입 기초산출

○ 국가정원 4개년 입장객 수

(단위 : 명, %)

구 분	평 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입장객 수	3,416,300	4,526,341	3,848,525	4,093,836	1,196,497

○ 2021년 통합권 입장료

- 통합권발권자 : 3,416,300명(연평균 입장객) X 13%(탑승 비율) = 444,119명
- 평균 입장료 : 6,000원(통합권-단일권) X 83%(평균 탑승료 비율) = 4,980원
- 입장권 예상수입 : 444,119명 X 4,980원 = 2,211,712,620원

5-2. 세출 기초산출

○ 통합권 발권을 위한 시스템 및 장비 구축

- 시스템 구축 : 1식 X 1,500,000원 = 1,500,000원
- 발권기 구입 : 7,500,000원 X 1대 + 900,000원 X 5대 = 12,0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 과 장 김선순(☎ 749-2722)
운영수익팀장 송미옥(☎ 749-2736)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0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3. 3.

1. 심의주문

-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 다양한 정원식물 및 정원자재·용품 등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하여 가든마켓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원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정원 제1호 도시로서 정원수 표준 모델 시스템 도입 등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및 위치(안 제2~3조)
- 가든마켓의 기능, 시설의 종류 규정(안 제4~5조)
-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지도·감독,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8조)

4. 제 정 안 : 별첨

5. 관련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8.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21. 2. 9. ~ 3. 1.) : 의견제출자 없음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1. 27.(여성가족과-2134)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1. 25.(정원산업과-341)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2. 8.(기획예산실-2120)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2. 9.(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정원산업과 공고 제 2021-2호)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정원용 식물, 정원 자재 및 용품 등의 전시·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순천만 가든마켓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만 가든마켓”이란 정원수, 정원용 식물, 정원자재 및 용품 등 정원과 관련된 식물 및 물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말한다.
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3. “정원수”란 정원에 심어서 가꾸는 나무를 말한다.
4. “정원용 식물”이란 초화류, 관상수류, 화목류, 종자·종묘류, 구근류, 조경수, 잔디, 야생화 등을 말한다.
5. “정원자재 및 용품”이란 원예용 상토·비료, 정원가구 및 정원시설, 정원도구 및 용품 등 정원활동에 쓰이는 다양한 자재를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위치) 순천만 가든마켓(이하 “가든마켓”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813-7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가든마켓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정원용 식물, 국내·외 정원 자재 및 용품 등 판매
2.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정원수의 집하·선별·출하·판매(수출), 정보처리 등
3. 정원수·정원자재 및 용품 등의 생산·판매·소비·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추진
4. 정원수 품질인증, 규격화, 표준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
5. 가든마켓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제5조(시설의 종류) 가든마켓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판매장(정원용 식물, 정원자재 및 용품 등)

2. 정원수 공판장(경매장 포함)
3. 사무실
4. 야외 전시 판매장
5. 기타부대시설 등

제6조(운영 등) ① 가든마켓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가든마켓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가든마켓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든마켓 교육, 선진지 견학 등에 참여한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등에 대하여 행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가든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가든마켓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 ① 가든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가든마켓의 토지·건물·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이하 “관리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가든마켓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시설물을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해 임대한 시설물 및 장비는 제외한다.
3.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가든마켓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관리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6조(운영 등) ① 가든마켓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가든마켓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가든마켓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 입) 정원 자재·용품과 정원수 공판장에 대한 유통 및 판매 수익 산정

- 매출액 및 수익 산정 기준

구 분	정원자재·용품	정원수 공판장
매출액	• 2021년 국내 정원자재·용품 시장 - 248,784,717천원 기준 • 연평균 성장률 105% • 시장점유율 2025년 2% 목표	• 2021년 국내 정원식물 분야 시장 - 940,034,488천원 기준 • 연평균 성장률 101.2% • 시장점유율 2025년 2.5% 목표
수익	• 매출액 대비 수익 25%	• 매출액 대비 수수료10%

*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시설운영 효율화방안 수립용역」 수익 추정 참고

- (세 출) 초기 투자비(기자재 및 판매 물품 구입비)와 경상운영비(인건비, 운영비)로 구분

- 기자재 및 판매 물품 구입비 : 기본적인 시설장비, 정원관련 제품 구입비

- 인건비 : 2020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참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5% 적용

* 2021년 10명 → 2022년 19명 → 2023년 29명 → 2024년 37명 → 2025년 39명

- 운영비 : 전체 인건비의 30% 적용

※ 기자재 및 판매물품구입비와 운영비의 연도별 비용 증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 3%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2,971,992	-904,541	22,058	363,808	1,328,788	2,161,879
세입(a)	11,475,524	195,249	1,662,505	2,380,573	3,130,029	4,107,168
세출(b)	8,503,532	1,099,790	1,640,447	2,016,765	1,801,241	1,945,28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 비	8,503,532	1,099,790	1,640,447	2,016,765	1,801,241	1,945,289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5-1. 세입 기초산출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1,475,524	195,249	1,662,505	2,380,573	3,130,029	4,107,168
정원자재	4,303,004	77,745	672,651	882,855	1,112,397	1,557,356
정원수공판장	7,130,684	117,504	979,854	1,487,418	2,007,023	2,538,885
임대	41,836	0	10,000	10,300	10,609	10,927

○ 산출근거(2021년)

- (정원자재) $[1,243,924\text{천원}(1\text{년}) \times 25\%] \times 3/12 = 77,745\text{천원}$
- (정원수공판장) $[4,700,172\text{천원}(1\text{년}) \times 10\%] \times 3/12 = 117,504\text{천원}$

5-2. 세출 기초산출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8,503,532	1,099,790	1,640,447	2,016,765	1,801,241	1,945,289
기자재 및 판매물품 구입비	4,200,017	1,000,000	1,030,000	1,060,900	546,363	562,754
인건비	4,181,256	76,761	586,728	931,435	1,229,715	1,356,617
운영비	122,259	23,029	23,719	24,430	25,163	25,918

○ 산출근거(2021년)

- (기자재 및 판매물품 구입비) 1,000,000천원 × 1식 = 1,000,000천원
 - 유통·작업장비 : 화물차, 지게차, 굴삭기, 수목이식기, 관리기, 중형관정 등
 - 제품구입비 : 정원자재 및 용품, 정원용 식물 등
- (인건비) 25,587천원 × 3개월 = 76,761천원
 - 3개팀 운영(10명) : 본부장 1, 팀장 3, 팀원 2, 기간제 4
- (운영비) 76,761천원(인건비) × 30% = 23,029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순천만관리센터 정원산업과 과 장 최영화(☎ 749-2767)
 정원산업정책팀장 김기옥(☎ 749-2780)
 담당자 김은정(☎ 749-2762)